

2025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(R&D)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

I

2025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(R&D) 사업 지원 안내문

■ 공고대상 사업

1-1.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(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)	3
1-2.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(혁신주체 네트워크)	10
2-1.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(일반형)	16
2-2.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(유니콘 프로젝트 1단계)	28
3-1. 이노폴리스캠퍼스(지역 인력 양성 지원)	38
3-2. 이노폴리스캠퍼스(기업가 정신 교육)	44
3-3. 이노폴리스캠퍼스(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)	51
3-4. 이노폴리스캠퍼스(엑셀러레이팅 지원)	57
4.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	63
5.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	69

■ 신청방법 및 절차

-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(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)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t.go.kr)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www.innopolis.or.kr)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- 사업설명회 : '25. 2. 5(수), 14:00 /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
- 공고 및 접수기간

사업명	공고기간	접수기간
1.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	'25. 1. 17.(금) ~ '25. 2. 18.(화)	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
2.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	'25. 1. 17.(금) ~ '25. 2. 18.(화)	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
3. 이노폴리스캠퍼스	'25. 1. 17.(금) ~ '25. 2. 18.(화)	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
4.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	'25. 1. 17.(금) ~ '25. 2. 18.(화)	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
5.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	'25. 1. 17.(금) ~ '25. 2. 18.(화)	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 -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

※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.

(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, 신청(제출)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)

- 접수처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
■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

-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사업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 (@innopolis.or.kr)
1.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				
1-1. 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	혁신기업지원실	박수연	042-865-8971	psy1114
1-2. 혁신주체 네트워크	기술창업지원팀	최광욱	042-865-8981	kwchoi
2.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				
2-1. 일반형	기술이전 기업	혁신기업지원실	윤주한	042-865-8974 jhyoun55
	연구소기업	기술창업지원팀	공혜원	042-865-8985 intender12
2-2. 유니콘 프로젝트	기술창업지원팀	최광욱	042-865-8981	kwchoi
3. 이노폴리스캠퍼스				
3-1. 지역 인력 양성 지원	기술창업지원팀	김슬기	042-865-8987	knkskkkr
3-2. 기업가 정신 교육	기술창업지원팀	이대기	042-865-8986	sinni0519
3-3.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	기술창업지원팀	이대기	042-865-8986	sinni0519
3-4. 엑셀러레이팅 지원	기술창업지원팀	최광욱	042-865-8981	kwchoi
4.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	혁신기업지원실	박수연	042-865-8971	psy1114
5.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				
- 일반형	대덕특구 소재 기업	혁신기업지원실	이민규	042-865-8973 mrleemingyu
	대덕특구 연구소기업	기술창업지원팀	이대기	042-865-8986 sinni0519
- 대형		혁신기업지원실	박수연	042-865-8971 psy1114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대덕특구 내 대학, 출연(연) 등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의 역량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출연(연) 창업 문화 활성화

사업내용

- 공공연구기관, 기술지주회사 등이 보유한 인적 역량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특구 내 출연(연) 연구자 대상 기업가정신 ·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

2. 지원내용

2025년 예산규모 : 총 200백만원

- 지원규모 : 단독 또는 컨소시엄 최대 200백만원 이내

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지원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대덕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

가. 국립연구기관

- 나. 정부출연연구기관(특정연구기관 육성법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)
 - 다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(대통령령)
 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산학협력단 포함)
 - *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
 - 2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
 - 3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- 4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
 - 5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·조사·개발·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
 - 6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
 - 7.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
 -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 - *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(분원)도 포함

- 공동연구개발기관 : 대학, 출연(연)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(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) 등 컨소시엄 가능

□ 지원내용

- 기관이 보유한 인력, 교육 프로그램, 창업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, 출연(연) 연구자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

- (기업가 정신 교육) 출연(연) 연구자들에 대한 창업 문화 함양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(창업 교육)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추진하는 출연(연) 연구자들에 대한 현장 중심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(예시 : 대덕특구 딥테크 혁신성장포럼)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: 전액(100%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

- 대학, 정부출연기관,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, 직접비의 5% 계상 가능 (현물,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연구개발부담비 제외)

□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
□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른 '제외과제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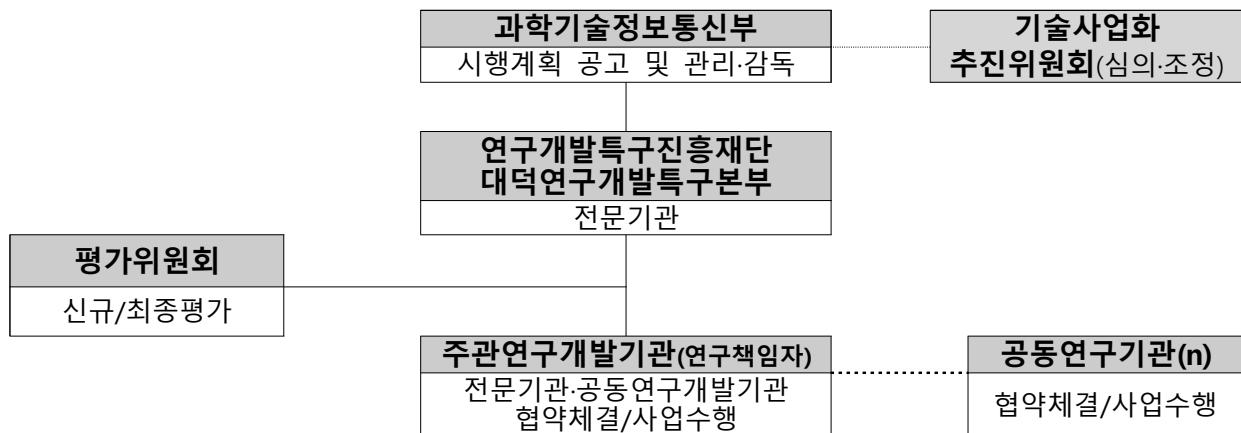
□ 연구개발성과의 소유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)

-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
-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
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
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,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(연구개발성과를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
 -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
 - 외국에 소재한 기관·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: 연구 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
-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 -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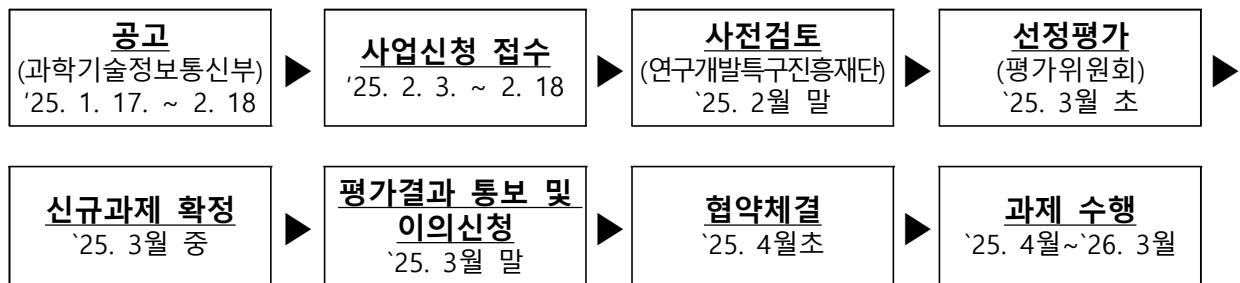
□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: 연구장비 계상 불가
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사업 추진체계



추진절차



*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

4.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(%)
수행기관 역량	• 기술기반 창업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도	30
	•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	
추진계획의 타당성	• 사업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	50
	•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	
	• 교육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	
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	•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	20
	•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, 경제적, 지역적 파급효과	
계		100

*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 -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 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*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 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-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 1:1 이하의 단독 · 미응모의 경우,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
 -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: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,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

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: 해당 없음

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: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
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 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
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21년도~'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(국세청(홈택스)발급)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* 접수마감일 기준 '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('23년도)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* 단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·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
* 선정평가 이후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5.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사업공고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s://www.ntis.go.kr>)
- 연구개발특구포털(www.innopolis.or.kr)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
□ 신청방법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□ 접수기간 : 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(IRIS 시스템 시간 기준)

□ 제출서류 :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(PDF, 한글, 엑셀)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

번호	서류명	서식	제출대상			파일형식
			주관	공동	위탁	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○	-	-	HWP
2 (필수)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	○	○	○	PDF
3 (필수)	사업자등록증	-	○	○	○	PDF
4 (필수)	법인등기부등본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○	○	○	PDF
5 (필수)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	서식 3호	○	○	○	PDF

번호	서류명	서식	제출대상			파일형식
			주관	공동	위탁	
6 (필수)	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※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	-	O	-	-	PDF
7 (필수)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4호	O	O	O	PDF
8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	서식 5호	O	O	O	PDF
9 (필수)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서식 6호	O	O	O	PDF
10 (필수)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(21~'23) 기준 국세청 흠택스 발급분	-	O	O	O	PDF
		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
11 (필수)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O	O	O	PDF
		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
12	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(실적증명서 등) ※ 최근 3개년, 최대 5개 이내	서식 7호	해당시	해당시	해당시	PDF
13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	서식 8호	해당시	-	-	PDF
14 (필수)	참여연구원 정보	서식 9호	O	O	O	엑셀(Excel)

신청 시 주의사항

-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
-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,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
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,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
-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,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

문의처(담당부서)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창업지원팀

○ 담당자 : 이대기 연구원(sinni0519@innopolis.or.kr/042-865-8986)

6. 기타사항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 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 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,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